

損失補償契約書

損失補償契約書

1. 공익사업명 : 기린면208호(설피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2. 물건의 표시 및 보상금

소재지	지 번	지 목 (물건의 종류)	면적(m ²)	단가(원)	금 액(원)
진동리	177-14	대	2	139,000	278,000
"	177-15	전	103	108,500	11,175,500
"	177-16	전	95	108,500	10,307,500
"	177-17	전	64	108,500	6,944,000
"	177-15	컨테이너(3*5)	1식	일식	500,000
		차양(철파이프판넬)	5	41,000	205,000
		평상(2*3.5)	1식	일괄	200,000
		탁자(목조1*2.5)	1식		
계					29,610,000

제1조(계약당사자) 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상기토지의 손실보상에 있어 보상자 **인제군수**를 "갑" 이라 피보상자 **송말선**을 "을" 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①사업에 편입되는 부동산(물건 등)의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정한 아래의 보상 금으로 한다.

금29,610,000원 (금이천구백육십일만원)

②보상금이 지급된 이후라도 보상금산정 등의 착오 등이나 지적 분할 또는 현황측량 결과 등에 따라 편입면적 등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부동산(물건 등)의 종류, 수량 등을 잘못 산정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금 지급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단가에 의하여 보상금을 정산하며 과다지급 된 경 우에는 제7조에 의하여 환수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 등) "을" 은 "갑" 에게 부동산(물건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상금 청구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갑" 은 부동산(물건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을" 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

제4조(하자담보 책임 등) "을"은 부동산(물건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할 때에는 실제로 "갑"이 원시취득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이에 저해되는 권리, 하자 부담 등의 말소 또는 해약, 해지, 철회 등의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동산(물건)등에 설정된 모든 권리등과 계약체결 이후부터 부동산(물건 등)의 인도 이전 또는 철거시 까지 발생한 모든 권리 등의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조세·공과금 등) 부동산(물건 등)의 양도일 이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여 부동산(물건 등)에 부과 되었거나 부과 될 조세, 공과금 등은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 후 라도 "을"이 부담한다.

제6조(토지분할)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분할경계는 "갑"이 정한다.

제7조(보상금 환수 등) 보상금 지급 후에 계약의 해제, 해지, 변경, 착오지급이나 기타사유로 지급된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할 경우 "갑"은 그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 즉시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변경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을"이 납입기한까지 반환 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행위제한 등) 부동산(물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한한다.

① "을"은 계약체결 후 부동산(물건 등)에 제3자에게 지상권 등의 권리 설정이나 임대(사용대차, 전대 등을 포함한다) 또는 양도하지 못하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설치행위, 수목의 식재, 작물의 파종 및 이식 등 일체의 경작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수목의 식재 및 경작행위 등을 할 경우 "갑"이 강제로 철거하고, 이전 또는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물건 등) 등에 대하여 지상권자·질권자·세입자·점유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하 "지상권자 등"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을"은 본 계약 전에 말소 또는 해약절차를 이행하고 "갑"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위 지상권자 등이 부동산(물건 등) 등을 인도·이전 또는 철거 하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부동산(물건 등)에 임대차(전세권 설정을 포함한다) 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전세권설정) 관련 합의"를 작성 제출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등)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해지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① 사업의 폐지·변경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물건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에 필요치 아니할 때.

- ② "을" 이 계약서에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때.
- ③ "을" 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부동산(물건 등)을 취득·사용·인도·이전 또는 철거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④ "을" 이 "갑" 에게 제출한 보상금 청구 서류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판단 될 때.
- ⑤ "을" 이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조세·공과금의 체납처분,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 신청이 있을 때.

제10조(손해배상) "을" 은 본 계약 각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에 하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갑" 이 부동산(물건 등)을 취득 할 수 없거나 기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갑" 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조문해석 등) 본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 , "을" 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되 민법에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갑" 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 본 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 의 소재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체결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과 "을" 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11월 9 일

(갑) 보 상 자 인 제 군(3241)
 위군수 최 상 기

(을) 피보상자 송 말 선



인 제 군

하늘내린 인제

수신 수신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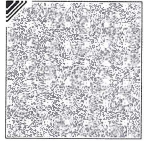
(경유)

제목 보상협의 요청[기린농어촌도로208호(설피선)도로개설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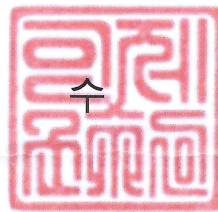
1.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기린농어촌도로208호(설피선)도로개설공사』에 귀하의 토지 및 물건이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요청하오니 협의 기간 내 조속한 보상시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협의기간	2019. 6. 24. - 2019. 7. 23.	
보상금 내역	첨부 소유자별 보상내역서 참조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내역 참조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우리군 소정양식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소유자가 제출한 계좌로 보상비 입금	
협의장소	인제군청 3층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협의방법	소유자 구비서류 제출 및 우리군 소정양식 계약체결	

- 붙임 가. 보상내역 1부
 나. 구비서류내역 1부. 끝.



인 제 군 수



주무관 김상만 토목담당 출장 건설행정담당 대결 2019. 6. 14. 안전건설과장 전결
 협조자 주무관 김승기 용석수

시행 안전건설과-16461 (2019. 6. 14.) 접수

우 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 <http://www.inje.go.kr>

전화번호 033-460-2092 팩스번호 033-460-2289 / ksm42770000@korea.kr / 비공개(6)

기린면208호(설피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편입물건 보상조서

소유자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면적(㎡) (수량)	삼청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산정금액		비 고
					단 가(원)	금 액(원)	단 가(원)	금 액(원)	단 가(원)	금 액(원)	
송말선	진동리	177-15	컨테이너(3*5)	1식	일식	500,000	일식	500,000	일식	500,000	
			차양(철파이프판넬)	5	42,000	210,000	40,000	200,000	41,000	205,000	
			평상(2*3.5)	1식	일괄	200,000	일괄	200,000	일괄	200,000	
			탁자(목조1*2.5)	1식						95,000	

토지(물건)보상 구비서류 제출내역서

1. 기본서류

- 인감증명 2통 (일반용)
- 주민등록초본 2통 (주소변동사항 및 전입일 등 모두 포함)
- 통장사본
- 인감도장

2. 문의처 ————— ☎ (033) 460-2092 (토목담당)

(방문 시 담당자가 출장 중일 수 있사오니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 설정시에는 도로편입지번(분할지번)만 일부해지 등기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33 461 4505 - 죽령 팅스